

# 거짓 약속

네팔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AMNESTY**  
INTERNATIONAL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이 살 집도 짓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외국에 갔어요. 1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2년 있었고, 이후 6년 전에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2년 전 이라크에 가려고 두 번 시도 했고, 올해엔 아프간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 두바이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취업알선업체가 일도 안 준 채 저를 거기 방치했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네팔에서는) 농사 외에 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죠.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에 나가 일을 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DK, 43세 남성, 네팔 치트완 지역

매년 수십만 명의 네팔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다. 많은 수는 걸프국가나 말레이시아로 흘러 들어가 인권침해와 착취에 시달리며 일한다. 이들은 출국하기 전에 이주 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네팔 브로커와 취업알선업체를 가장 먼저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취업알선업체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하게 될 일의 성격이나, 임금, 노동 조건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착취를 당하곤 한다.

정부 규제가 있지만, 막대한 이윤을 누리는 취업알선업체는 면책특권을 누리다시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정부 관련 부처는 취업알선업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하고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클 수 있다. 외국에 나가 일하려는 네팔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들은 비싸고 사기성 질은 강제 복권 놀이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기존 규제만 제대로 적용하더라도 이주는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 경제적 이유

지난 10년 동안, 일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간 네팔인 수는 공식적으로 연 55,025명에서 294,094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수는 이보다 두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민 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국내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목적국에서는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송금한 액수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다다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네팔의 가장 큰 외화수입원이다.

실업률이 약 46%나 되고 임금은 낮은 상황에서 해외 이주는 수십만 명에게 경제적 희망인 셈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짓고 자식을 교육시킨다.

그러나 이주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미화 1,400달러에 달하는 취업알선수수료를 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대출받는다. 이자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14%로 정해져 있지만 연 평균 35%, 심지어는 60%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브로커(사실 취업알선업체)의 약속만 믿고 이런 사채를 빌린다. 이후 실제 임금 액수가 밝혀질 때쯤 되면 이미

빠져 나오기엔 너무 늦었다. 그래서 많은 이주노동자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진 상태에서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신분증을 빼앗기고 동의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 속임수로 시작되는 인권침해

해외이주를 준비하는 네팔인은 고향 마을을 출발하기 전부터 인권침해를 받기 시작한다. 대다수 취업알선업체가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지역 브로커를 이용한다. 이 브로커들은 농촌지역에서 취업알선 절차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취업알선 서비스가 집중된 수도까지 가는 비용을 절약해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브로커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취업알선업체보다 브로커를 더 신뢰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신뢰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난다.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알선해준 일의 성격과 임금에 대해 종종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해외에 나가서도 더 큰 착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국제앰네스티

좌: 네팔 수도 카트만두 아손 바자아르 (Ason Bazaar) 거리. 실업률이 46%에 달하는 상황에서 네팔인 수천 명이 해외에서 일을 구하러 네팔을 떠난다.

표자: 바레인에서 일하는 네팔 건설 노동자 © 조나단 루이스

취업알선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을 속인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업알선업체들이 네팔 이주노동자를 인신매매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이후에도 계속 착취하는 데 관여한다. 이주노동자가 가장 먼저 겪는 인권침해는 임금이나 일의 성격, 노동시간 등 계약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115명 중

108명이 취업알선업체 혹은 브로커로부터 고용계약 조건에 대해 사기 당했다고 답했다.

“키프로스에 있는 한 빵집에 취직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취업알선수수료를 내기 위해 35만 네팔루피(약 미화 4,900달러)를 빚을 졌어요. 취업알선업체는 제가 한 달에 500유로(미화 720달러)를 벌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공항에서 막상 계약서를 받아 보니, 가사노동자로 일해야 하고 한 달에 150유로(미화 215달러)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취업알선업체가 저를 속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출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했어요.”

SN, 29세 여성, 네팔 카트만두 출신

리비아 (숙식 미제공)	미화 250달러
리비아 (숙식 제공)	미화 175달러
카타르	미화 165달러
리비아 (숙식 미제공)	미화 125달러
말레이시아	미화 125달러
이스라엘	임금 하한선 없음

네팔 정부가 정한 국가별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출처: 네팔 해외고용부)



**네팔 해외고용부가 정한 국가별 취업알선 수수료 상한선**  
(출처: 네팔 해외고용부)



**“일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정기적이지 못했어요. 일이나 돈을 아예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착한 후 바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또는 두 달까지 기다리는 일도 있어요. 돈은 물론 못 받죠. 우리는 리비아에 모두 합쳐 21 개월 있었는데, 이 때 최소 6개월 동안은 돈을 못 받았어요. 마지막 6개월 동안은 회사가 문닫아서 일을 못했어요. 우리 중 일부는 8~9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리비아로 간 108명 노동자 대표

정부 규제 상, 취업알선업체는 같이 일하는 모든 브로커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브로커를 등록할 때 내야 하는 고액의 수수료,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브로커는 하나의 취업알선업체만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규정 등으로 인해 2011년 8월 현재 3명의 브로커만 등록되어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등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취업알선업체를 감시하거나 법 위반자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 취업알선업체도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 등록하기는 하지만, 보증금 납부가 유일한 등록 조건이다. 결국 네팔 정부는 법이 존재함에도 취업알선업체를 적절히 감시·감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알선 수수료**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브로커에게 취업알선수수료를 낸다. 정부가 취업알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질문에 답한 57명의 이주노동자 중 42명이 네팔 법이 규정한 상한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알선업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목적국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야 한다.

법은 또한 노동자들이 네팔을 떠나기 전에 계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뷰 응답자 62명 중 27명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받은 사람은 출국하기 몇 일 혹은 몇 시간 전에 받았고, 모든 계약서는 네팔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쑤다.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고 출국 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기당한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일 자체는 계약과 같다고 해도, 임금이 체불되거나 아예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 취업알선업체나 고용주 모두 이 상황을 개선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목적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진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 타워트 안.라만 (www.tawhidrahman.com) Copyright 2010

기온이 50°C나 되는 바레인 사아르(Saar)에서의 고된 도로 건설 작업. 많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애초에 다른 일을 약속 받은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착취 당하더라도, 고용주가 여권을 압수하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회사를 떠날 수도 없다.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묶여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회사를 바꿀 수도 없고, 귀국하기도 힘들다.

## 여성 가사노동자

해외로 이주하는 대다수 여성은 가사노동자로 일한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물과 법적 규제, 사실상 이주 금지 조치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 가사노동자는 이주하기 전에 자기 가족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주하며, 그래서 고용계약이나 훈련, 보험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네팔을 합법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부정부패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귀국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하는 네팔 비영리단체인 포우라키(Pourakhi)는 카트만두 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출국하는 가사노동자가 출국심사대 직원에게 1~6만 네팔루피 (미화 140~850 달러) 상당의 뇌물을 준 사례가 자신들이 기록한 것만 100건 이상이라고 전했다.

“공항에는 매우 조직적이고 고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브로커와 취업알선업

체는 출국심사대 직원에게 손쉽게 뇌물을 전해준다”라고 포우라키 쉼터담당자인(Safe House Coordinator) 무나 가우탐이 말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항상 직접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건 아니다. 여성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쯤 되면 취업알선업체가 이미 뇌물을 그 직원에게 건넨 후고, 그래서 그 여성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립적인 가사노동의 특성상 여성 가사노동자는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17명의 가사노동자 중 11명은 신체적 혹은 언어적 학대를 당했거나 폭력을 동반한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 외출이 금지되거나 휴일이 없었다고 답했다.

**“휴일도 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설 틈을 안 줬어요. 집주인은 계속 야단치고. 15일 동안 있었는데 흥차랑 피타빵만 먹고 버텼어요. 주인가족이 먹고 남은 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주인은 집 밖으로는 못나가게 하고, 여권을 가져갔어요. 잠잘 때도 집주인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악몽을 꿴어요.”**

쿠웨이트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 G.M., 34세 여성, 네팔 카스키 지역



“계약서를 공항에서 받았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브로커가 구두로 번역해줬습니다. 월급은 1,250[말레이시아링깃(미화417달러)] 이고 하루 8시간에 시간외 수당도 있고 숙박은 무료이며,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급이 450링깃(미화150달러) 이었고 시간외수당이나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해야 했어요.”

토야 프라사드 삼코타(Toya Prasad Sapkota), 31세 남성, 카이라리



© 국제엠네스티 사진: 톰 고든



© 국제엠네스티

“밤새 고문당하고, 벨트로 맞고, 굶주리면서 화장실에 감금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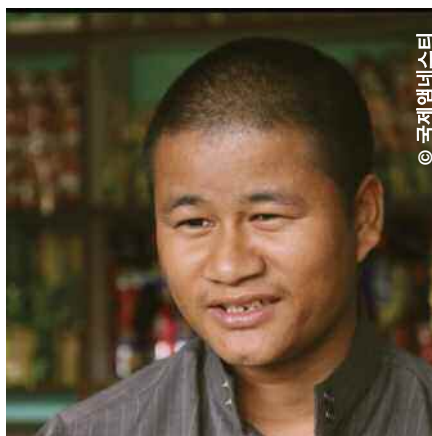
수실라 람(Sushila Ram)이 쿠웨이트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면서 당한 인권침해를 설명하고 있다



© 국제엠네스티

“몸 왼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리에는 온갖 금속 볼트와 판이 들어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일하다 다친 락스미 카데리아(Laxmi Kaderia)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 국제엠네스티

푸스파 갈레(Puspa Ghale)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계공으로 고용됐다. 실제 하는 일은 건설현장 유지보수 업무였다.



© 국제엠네스티

쉬암 초다리(Shyam Chaudhari)가 여권에 있는 비자를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운전수로 일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 비자가 취소되어 낙타 사육을 해야 했다.



2006년 6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노동자. 많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애초에 다른 일을 약속 받은 경우가 많다.

## 제도적·법적 해결

피해 이주노동자가 네팔에서 제도적·법적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 제도가 있기는 하다. 이주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정부 보조의 복지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외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가해 혐의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면 해당 건은 해외고용재판소(Foreign Employment Tribunal)에 회부된다.

그러나 정부 기관은 대다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농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카트만두에 있다. 그리고 상당 수가 정부 지원책에 대해 무지하다. 그리고 실제 진정서를 제출하는 극소수의 경우, 처리 과정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 많은 이주노동자는 카트만두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귀향한다.

“해외고용부는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지 않은 채 무작정 쌓아놓고 이주노동자들이 기다리다 짜증나서 진정서 처리를 포기하고 집에 가기를 바란다”라고 네팔노동조합 총연맹(GEFONT) 이주노동국장(Head of the Migrants Desk)인 사마르 타파가 말한다. “그래서 실제 재판소에 회부되는 건이 몇 건 안 된다.”

##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네팔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여러 개의 국제 조약에 서명했다. 해당 조약 당사국으로서 네팔 정부는 취업알선업체와 브로커를 제대로 규제함으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 조건을 제공받을 권리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007년에 제정된 해외고용법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취업알선 절차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하여 취업알선업체가 법을 지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범위한 부정부패 및 취약한 거버넌스 때문에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네팔은 부정부패 통제력에 관한 거버넌스 국가 순위에서 하위 25%에 속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속이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죄로 해외고용법 하에서 벌금, 영업정지, 기소, 폐쇄 조치 등 처벌을 받은 취업알선업체는 하나도 없다. 결국 근무 조건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속이고, 허위 계약을 맺고, 정부 상한선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낸 취업알

선업체가 사실상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저지른 자가 법적 처벌을 합당하게 받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정부가 취하지 않았다. 브로커나 취업알선업체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일과 임금, 기타 노동조건을 속이는 행위는 인신매매에 속하며, 착취로 이어져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

**강제노동:**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요당하는 모든 노동(강제노동협약제2조)

**인신매매:** 강압, 납치, 사기,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돈을 주고 받음으로써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반, 이송, 은신 혹은 제공받는 행위(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 제3조a항)





물론 목적국 정부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나, 네팔 정부역시 취업알선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네팔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여태까지 취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네팔 국내법을 집행하지도,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

최근 리비아에서 귀국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알선기관 대표가 낭독하고 있는 체불 임금 보상안에 대해서 듣고 있다. 이주노동자 108명이 네팔노동총과 국제앰네스티의 지원 하에 해외고용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해외고용법 모든 조항을 온전히 집행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취업알선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문제 발생 시 모든 이주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진정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제도는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간결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성별에 근거한 이주 전면금지 조항 도입, 여성이 정부로부터 이주 허가를 받기 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폐지해야 한다.

-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하고 온전히 집행해야 하며,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삽입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False promises: Forced labou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문서번호: ASA 31/007/2011)에 권고사항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ASA 31/008/2011  
Korean

2011. 11. 국제앰네스티 발간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amnesty.org